

## 제18장 최종 규정

### 제18.1조 부속서, 부록, 부속서한 및 각주

이 협정의 부속서, 부록, 부속서한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### 제18.2조 개정

1. 어느 한쪽 당사국은 검토와 권고를 위하여 공동위원회에 이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.
2. 이 협정의 개정은 공동위원회의 권고 후, 그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양 당사국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 완료를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.
3. 이 협정의 개정은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, 제18.4조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발효한다.

### 제18.3조 존속 및 종료

1.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.
2.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고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.

## 제18.4조

### 발효

1. 이 협정의 발효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 당사국의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와 양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국의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의 외교 경로를 통한 교환을 조건으로 한다.
2. 이 협정은 마지막 서면 통보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.

## 제18.5조

### 정본

이 협정은 한국어, 아랍어 및 영어로 2 부씩 작성되었다.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. 차이가 있는 경우, 영어본이 우선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[ ] 년 [ ] 월 [ ] 일 [ ]에서 한국어,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

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를 대표하여